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2. . .	
연월일	(제 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공포, 0000.00.00.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4호, 2022.8.2.공포, 2023.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인 지정신청자의 지정신청서·인력 현황·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유효

기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처분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지정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협약서 서식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협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협약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3조의4제6호의 확약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18조에 따른”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과 법 제11조의3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력 현황 및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등을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산업별·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기준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 ④ (생략) <신설>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3조의4제6호의 <u>확약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u>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과 법 제11조의3의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 ④ (생략)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생략)
<신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력 현황 및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등을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산업별·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신 설>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
정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5서식
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
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기
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
지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